

<p>캘리포니아 법무부 법 집행부 스티븐 울러리(Stephen Woolery), 수석(대행)</p> 	<h1>정보 공지</h1>	
<p>제목: 상원 법안 464(2023) 피해자의 권리와 미검사 성폭행 증거 키트에 대한 주 전체 감사 요건 개정</p>	<p>번호 2024-DLE-03</p>	<p>정보 문의: 니키 두다(Nikki Duda) 포렌식 서비스국 부국장 916-210-7446</p>
	<p>날짜: 2024년 6월 20일</p>	

대상: 모든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 및 공공 범죄 연구소

이 공지는 형법 680, 680.3, 11116.10절을 개정하고 680.4절을 폐지 및 대체한 상원 법안(SB) 464(캘리포니아주 통계법 2023, 챕터 715)의 요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개정안

2024년 1월부터 피해자는 성폭행 증거 키트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 680, 하위 항목 (h)(2))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키트를 수집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수령하는 법 집행 기관은 해당 피해자로부터 수집한 키트를 실험실에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키트는 의료 시설이나 법 집행 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공 범죄 실험실에서 이러한 키트를 수령한 경우, 해당 실험실은 법 집행 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키트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키트는 DNA 검사를 하거나, 법무부(DOJ)의 성폭행 법의학 증거 추적(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말아야 하며, 미검사 성폭행 증거 키트에 대한 주 전체 감사 내용에 보고하지 말아야 합니다(아래에 설명).

신속 처리 DNA 프로그램(예: 법무부의 신속 DNA 서비스(RAD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할권 내 의료 시설은 의료 시설에서 범죄 실험실로 직접 키트를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신속 처리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 곳에서 키트를 검사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은 두 키트(즉, 기존 키트 또는 표준화된 키트와 신속 처리 DNA 키트)를 모두 보관하거나 또는 검사하지 말라는 지침과 함께 두 키트 모두를 법 집행 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피해자가 키트를 검사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경우, 해당 키트를 실험실에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 또는 증인이 사건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처분 내용(예: 법원의 공소기각, 무죄판결, 형의 부과,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30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형법 § 11116.10, 하위 항목 (a)) SB 464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한이 60일이었습니다.

미검사 성폭행 증거 키트에 대한 주 전체 감사

SB 464에 의해 추가된 형법 680.4절은 모든 "법 집행 기관, 의료 시설, 공공 범죄 연구소 및 성폭력 증거 키트를 접수, 유지, 보관 또는 보존하는 기타 모든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검사 성폭행 증거 키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정보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680.4절은 이 감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접수한 정보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법 § 680.4, 하위 항목 (d).)

이러한 감사는 피해자와 용의자로부터 수집한 기존 또는 표준화된 성폭행 증거 키트에만 적용됩니다. 키트에 수집된 증거 이외의 성폭행 증거(예: 의류 및 침구류, 용의자 및 합의한 파트너로부터 수집한 DNA 참조 샘플, 성폭행 혐의가 없거나 성폭행으로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집한 기타 유형의 키트)는 해당 감사의 대상이 아니며 법무부의 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않습니다(아래 설명 참조). (형법 § 680.4, 하위 항목 (b)(4).)

이 감사의 목적상, 기존 또는 표준화된 성폭행 증거 키트와 이와 관련된 신속 처리 DNA 키트(예: RADS)는 동일한 키트로 간주됩니다.

SB 464에 의해 개정된 680.4절에 따라 '검사 키트'는 최소한 DNA 정량화 과정을 거친 키트를 의미합니다:

a) DNA 정량화 결과 피해자에게 외부 DNA가 없거나 외부 DNA의 특징과 양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DNA 정량화 단계에서 분석을 중단하고 키트를 검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b) DNA 정량화의 결과 DNA 감식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유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DNA를 성공적으로 감식하기에 충분한 분량과 특징이 확보된 경우, 키트를 검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DNA 감식을 통해 분석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생물학적 검사만 거친 키트는 검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신속 처리 DNA 프로그램에 따라 선별된 증거 샘플을 범죄 실험실에 직접 제출하고 해당 샘플이 DNA 검사 과정을 거친 경우 전체 성폭행 키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검사 완료' 키트라도 사례 기록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완료 키트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해당 키트의 샘플을 추가로 검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집행 기관 및 공공 범죄 연구소를 위한 감사 지침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법 집행 기관과 공공 범죄 연구소는 다음을 시행해야 합니다.

- 1) 미검사 피해자 키트의 경우: 2026년 7월 1일 기준 DNA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 성폭행 증거 키트에 대한 기록을 법무부의 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작성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키트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수집되었고 그리고 피해자가 키트를 검사하지 않기를 요청한 경우, 해당 키트를 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는 안 되며 해당 감사에 보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 피해자는 의명을 유지하거나 수사 또는 기소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되 동시에 키트 검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 2) 미검사로 의심되는 키트의 경우: 2026년 7월 1일 기준 DNA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모든 성폭력 용의자 증거 키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법무부에 보고합니다. (형법 § 680.4, 하위 항목 (b).) 미검사 의심 키트 보고용 엑셀 템플릿은 <https://oag.ca.gov/bfs/prop69>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속 기관이 680.4절에 따른 감사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기록되려면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소속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검사 피해자 성폭행 증거 키트 해당 사례에 대해 각 키트에 대한 SAFE-T 기록을 작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키트에는 추가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다음 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이메일(SAEKaudit@doj.ca.gov)을 보냅니다.
 - a. 귀하의 소속 기관에는 '미검사 피해자 키트 해당 사례가 없음'이라고 보고합니다(해당되는 경우).
 - b. 귀하의 소속 기관에서 작성한 미검사 의심 키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위에서 설명한 대로) **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검사 의심 키트가 없음'이라고 보고합니다.
 - c. 귀하의 소속 기관은 성폭력 증거 키트를 수령, 유지, 보관 또는 보존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감사의 대상이 아님을 보고합니다(해당되는 경우).

SAFE-T 기록 보관 요건 업데이트

이전에는 형법 680.3절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수집한 모든 성폭력 증거 키트에 대해 법 집행기관이 법무부의 SAFE-T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2024년부터 이 요건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모든 키트 **그리고** 키트 채취 날짜에 관계없이 2026년 7월 1일까지 DNA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키트에 적용됩니다. (형법 § 680.3, 하위 항목 (a), (h).)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키트를 검사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피해자로부터 수집한 키트는 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수집된 미검사 피해자 키트에 대한 SAFE-T 기록은 DNA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120일마다 SAFE-T에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형법 § 680.3, 하위 항목 (c)(2).) 또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수집한 키트도 120일 마다 업데이트 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의료 시설 및 기타 비법 집행 기관을 위한 감사 지침

성폭행 증거 키트를 수집하는 의료 시설과 성폭행 증거 키트를 수집, 수령, 유지, 보관 또는 보존하는 기타 비법 집행 기관도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단체는 법 집행 기관이나 공공 범죄 실험실에 제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미검사 성폭력 증거 키트에 대한 특정 정보를 **2026년 7월 1일까지**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형법 § 680.4, 하위 항목 (c).)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키트를 검사하지 않기로 요청한 피해자로부터 수집한 키트는 해당 감사에 보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이 아닌 단체가 미검사 키트 해당 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엑셀 템플릿은 <https://oag.ca.gov/bfs/prop69>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시설이 680.4절에 따른 감사 의무 준수를 완료한 것으로 기록되려면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1) 다음 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이메일(SAEKaudit@doj.ca.gov)을 보냅니다.
 - a. 미검사 키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미검사 키트 해당 사례가 없음'이라고 보고합니다.
 - b. 귀하의 시설이 성폭력 증거 키트를 수집, 수령, 유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감사 대상이 아님을 보고합니다.

법무부는 감사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2027년 7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2026년 7월 1일** 이전에 **SAFE-T**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를 근거로 합니다. **SAFE-T** 기록에 대한 후속 업데이트 사항은 감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680.4절은 해당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템플릿 사본을 요청하거나 키트가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이메일 주소 SAEKaudit@doj.ca.gov로 포렌식 서비스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AFE-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소 SAFET@doj.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